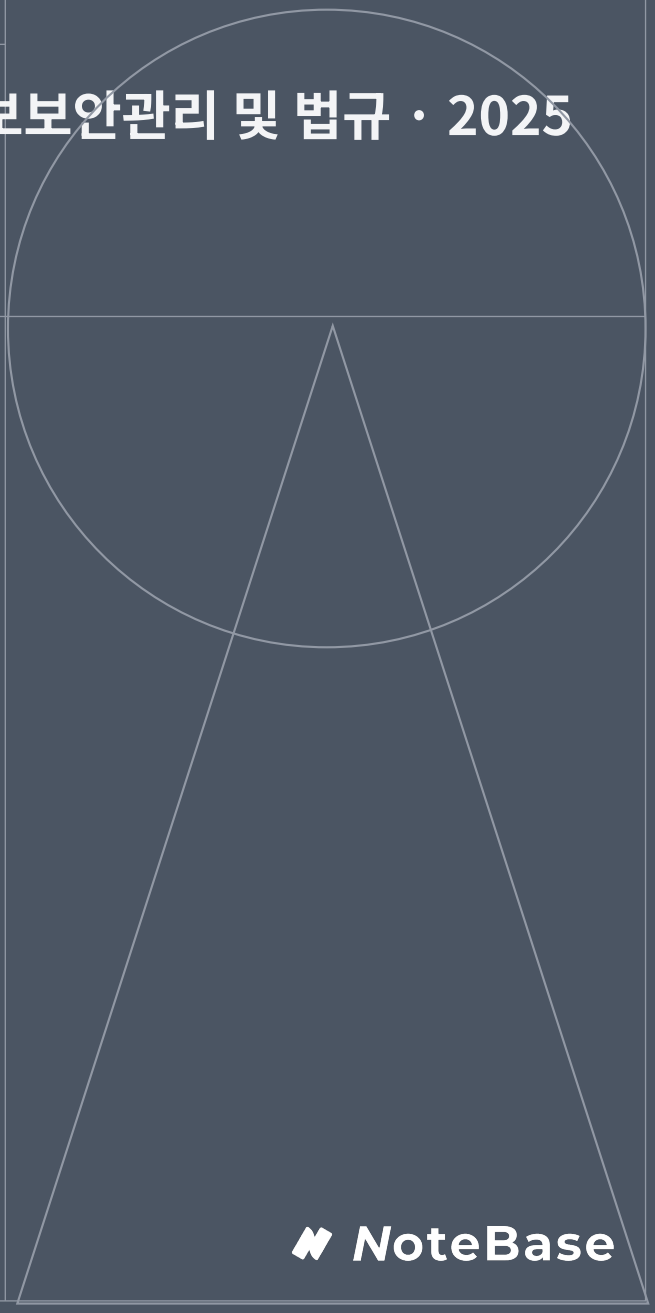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2025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2025

문 1. 정보보호 시스템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보보호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보안평가 인증제도 및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ITSEC

② CC

③ GDPR

④ TCSEC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GDPR은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규율하는 법규**이다. IT 제품·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ITSEC·CC·TCSEC과는 평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개념 구분

판단 기준은 정보보호와 관련 있는 명칭인지가 아니라 **IT 제품·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기준**인지이다.

ITSEC은 유럽에서 개발한 정보기술 보안평가 기준이다. 평가 대상 제품·시스템의 보안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발문이 제시한 범주에 들어간다.

CC는 여러 국가의 평가 기준을 조화시킨 국제 공통평가 기준이다. 제품의 보안 기능과 그 기능에 대한 보증을 평가하는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GDPR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이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보호 의무 등을 정하며, 정보보호 제품 자체의 보안성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기준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TCSEC은 미국에서 마련한 신뢰 컴퓨터 시스템 평가 기준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요구와 보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ITSEC·CC와 같은 범주이다.

따라서 제품 보안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GDPR이다.

NoteBase

문 2. 단 한 번의 시스템 인증을 통해 접근하려는 많은 정보 시스템에 재인증 절차 없이 접근 권한을 모두 얻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SSO

② OTP

③ DRM

④ AES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한 번의 인증 결과를 여러 시스템에서 이용하여 반복 로그인을 줄이는 방식은 SSO이다. 이는 연동된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허용된 접근 범위에 적용된다.

핵심 풀이

SSO(Single Sign-On, 통합 인증): 한 번 확인한 사용자의 인증 결과를 연동된 여러 정보 시스템이 이용하여 반복 로그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발문의 결정적 단서는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접근 권한을 모두 얻는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서비스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뜻이며, 각 시스템의 인가 정책까지 없애거나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한 번의 인증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동일한 값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인증값의 일회성**이 핵심이며, 한 번 로그인한 결과를 여러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SSO와는 구별된다. SSO의 최초 인증에 OTP를 사용할 수는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 관리):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 허용된 이용 범위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콘텐츠의 무단 이용·복제 등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러 시스템의 반복 로그인을 줄이는 인증 방식과 다르다.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대칭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암호화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기술이며, 단일 인증으로 여러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능의 명칭은 아니다.

따라서 발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SSO이며, ①이 가장 적절하다.

NoteBase

문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접근제어 모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군사용 보안구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
· 가용성이나 무결성보다 기밀성에 중점
· MAC 기법이며, 최초의 수학적 모델

① Clark-Wilson

② Bell-LaPadula

③ Biba

④ Chinese Wall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군사적 등급 체계·기밀성·강제적 접근통제(MAC)가 함께 제시되면 Bell-LaPadula를 떠올리면 된다. 이 모델은 보안 등급에 따라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여 비밀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막는다.

개념 구분

제시문의 핵심은 **군사 보안의 등급 체계와 기밀성**이다. ② Bell-LaPadula는 주체의 인가 등급과 객체의 비밀 등급을 비교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모델이며, 강제적 접근통제(MAC)의 대표적 기반이다. 높은 등급의 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

Bell-LaPadula는 보안 상태와 상태 전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기밀성 정책을 다룬 초기 형식 모델이다. 제시문의 '최초의 수학적 모델'이라는 표현은 이 역사적 맥락의 식별 단서이며, 모든 종류의 수학적 접근제어 연구가 이 모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하지 않는다.

① Clark-Wilson은 상업 환경에서 **잘 형성된 트랜잭션과 직무 분리**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한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고 검증된 처리 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점이 중심이다.

③ Biba는 주체와 객체의 무결성 수준을 이용해 **낮은 신뢰도의 정보가 높은 신뢰도의 정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다. 기밀성 중심의 Bell-LaPadula와 달리 무결성이 주된 보호 목표이다.

④ Chinese Wall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모델이다. 사용자가 이전에 접근한 기업 정보의 이력을 고려하여 경쟁 관계 등 이해충돌이 있는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군사적 비밀 등급에 따른 통제를 설명한 제시문과는 초점이 다르다.

NoteBase

문 4. 정보보안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연계

② 가치 분할

③ 자원 관리

④ 위험 관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보보안 거버넌스에서는 보안 활동이 조직에 실질적인 효익을 주도록 하는 **가치 전달**을 추구한다. 가치 분할은 이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니다.

개념 구분

정보보안 거버넌스는 경영진이 보안 활동의 방향과 책임을 정하고 조직 목표 달성을 감독하는 체계이다. 전략적 연계는 **보안 전략을 조직의 경영 목표에 맞추는 것**으로, 보안 활동이 업무 목표를 뒷받침하게 한다.

가치 전달(Value Delivery)은 보안 투자와 활동이 정보자산 보호, 손실 감소, 업무 신뢰성 향상 등의 효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활동은 **가치 분할이 아니라 가치 전달**이다.

자원 관리는 인력·예산·기술·지식 등 보안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 관리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조직의 수용 기준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략적 연계, 자원 관리, 위험 관리는 모두 거버넌스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위험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 위협은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나 행위자로 정의된다.
㉢ 취약점은 자산의 잠재적 속성으로써 위협의 이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나 때로는 정보보호대책의 미비로 정의되기도 한다.
㉣ 조직의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통제 혹은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보호 조치를 정보보호대책이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위험관리는 자산의 손실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응하여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취약점에는 자산의 결함뿐 아니라 **정보보호대책의 미비**도 포함되며, 보호대책은 그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나 피해를 줄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위험관리는 조직의 정보·시스템 등 자산에 어떤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여 대응하는 과정이다. 위험을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산과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위험을 반드시 0으로 만드는 활동이라는 뜻은 아니다.

㉡ O: 위협은 자산에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뜻한다. 공격자와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화재·정전·실수처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도 포함한다. 이미 발생한 손실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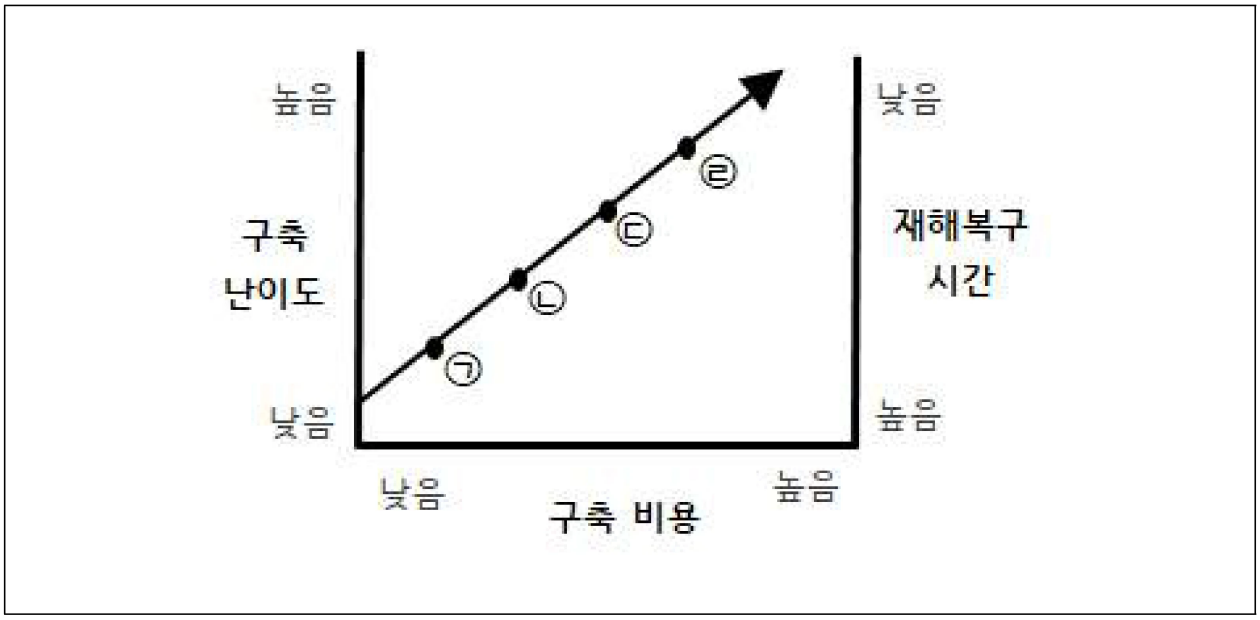
㉢ O: 취약점은 위협에 의해 이용되거나 촉발되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산·시스템·통제의 약점**이다. 소프트웨어 결함뿐 아니라 과도한 권한, 미흡한 출입통제 등 정보보호대책의 부재나 불충분한 운영도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잠재적 약점과 정보보호대책의 미비라는 설명은 서로 양립한다.

㉣ O: 정보보호대책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안전장치·통제·보호 조치이다. 접근통제, 보안 교육, 백업 등이 그 예이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모든 위협 행위자나 자연재해 자체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협이 자산에 미치는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이다.

㉠·㉡·㉢·㉣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설명은 4개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재해복구시스템에 관한 그림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상태로 실시간 복구를 지원한다.

② ㉡은 재해복구 센터에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보유하는 대신 중요성이 높은 정보기술자원만 부분적으로 보유한다.

③ ㉢은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여 최신의 데이터 상태를 유지하고 재해 발생시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복구한다.

④ ㉣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필요한 정보자원을 조달하여 복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구축 비용·난이도가 높고 복구시간이 짧은 쪽으로 **콜드 → 웜 → 핫 → 미러**가 배치된다. 따라서 ㉡은 중요 자원을 부분적으로 갖춰 두는 웜 사이트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구축 비용과 난이도는 커지고, 오른쪽 축의 재해복구 시간은 짧아진다. 이에 따라 ㉠ **콜드** → ㉡ **웜** → ㉢ **핫** → ㉣ **미러 사이트**로 대응시킨다.

① X: 주 센터와 동등한 자원을 원격지에 마련하고 양쪽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액티브-액티브 구성은 ㉣ **미러 사이트**에 해당한다. ㉠ 콜드 사이트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준비 수준이 낮아 재해 뒤 조달·설치·데이터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지의 ㉠을 ㉣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은 **웜 사이트**이다. 모든 운영 자원을 완비하기보다는 중요 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확보해 둔다. 콜드 사이트보다 준비 수준이 높지만 추가 자원 확보나 소프트웨어·데이터 복원 등이 필요하여 핫 사이트보다 복구가 느리다.

③ X: ㉢은 **핫 사이트**이므로 시스템을 신속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한다. 데이터를 보관해 두고 재해 뒤 서버와 소프트웨어부터 조달하는 설명은 콜드 방식에 가깝다. ㉢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정보기술자원을 사전에 갖추고 데이터를 복구·갱신하여 신속히 운영을 전환한다'로 고쳐야 한다. 데이터의 최신성은 별도의 백업·복제 주기에 달려 있다.

④ X: ㉣은 **미러 사이트**로, 동등한 자원과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갖추어 가장 신속한 복구를 지향한다. 데이터만을 토대로 필요한 자원을 사후 조달하여 복구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은 ㉠ 콜드 사이트 쪽의 한계다. 따라서 선지의 ㉣을 ㉠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7. ISMS-P 인증 심사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증심사는 ISMS-P 인증기준의 인증항목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현장심사의 경우 서면심사 진행 현황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한다.

② 인증심사 시 인증준비 미흡 또는 인증심사팀 요청사항 대응이 미흡한 경우,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심사팀이 철수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팀은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신청기관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상호 간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기관은 인증심사팀이 작성한 결함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④ 결함보고서에서 결함 사항은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준 미충족 문제 중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중결함**이다. ④는 일반 결함과 중결함의 구별을 잘못 설명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증심사는 관리체계가 기준에 맞게 구축되고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한다. 정책·절차·증적자료를 살피는 **서면심사와 실제 이행을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병행하며, 현장 일정은 서면 검토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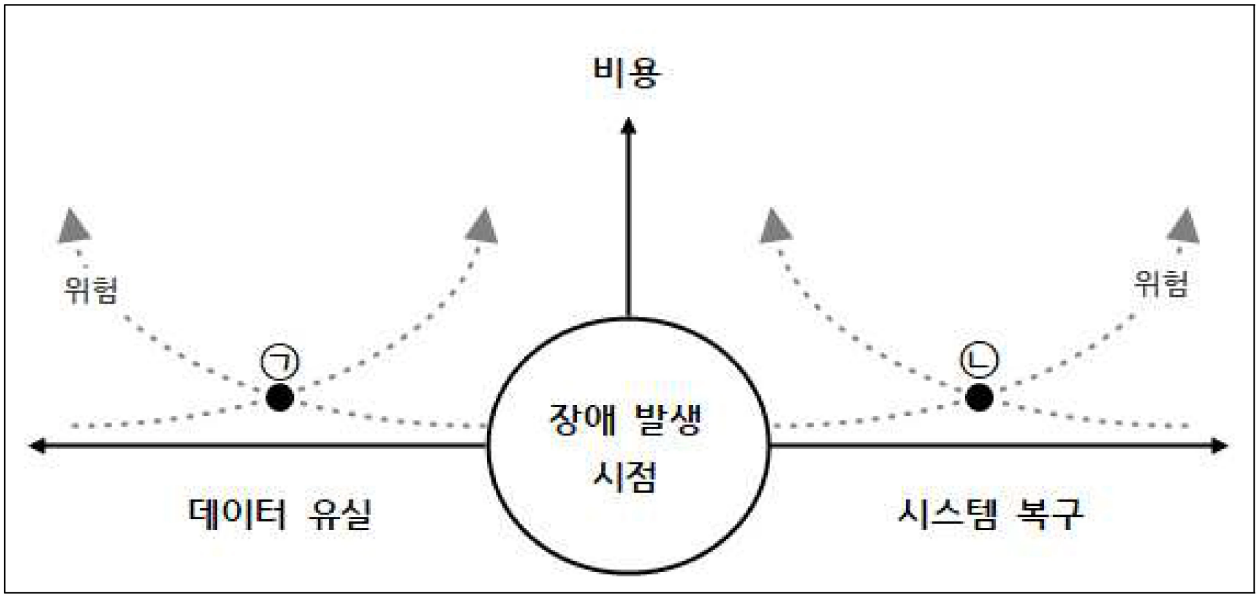
② O: 준비가 부족하거나 추가자료·현장 확인·면담 요청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처럼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팀 철수 또는 심사 중단이 가능하다. 모든 대응 미흡에 예외 없이 반드시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심사팀과 신청기관 담당자는 회의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결과를 서로 점검한다. 신청기관은 결함보고서를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는 사실관계 검토 절차이지, 신청기관이 임의로 인증기준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④ X: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중결함 사항**이다. 이 문항의 심사 안내에서 일반적인 결함 사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구별한다. 선지는 중결함의 설명을 결함 사항의 정의로 제시했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④가 정답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사업영향 평가에 관한 그림이다. ㉠, ㉡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업무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업무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② ㉡은 재해 시 복구 목표시간으로 구축 비용에 반비례하고 발생 손실에 비례한다.

③ ㉠과 ㉡이 0이라는 의미는 재해복구시스템의 미러 사이트를 의미한다.

④ ㉠과 ㉡은 잠재적 위험요인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재해 시의 피해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장애 발생 전 데이터 유실을 나타내는 ㉠은 **복구시점목표(RPO)**이다. 업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중단 시간은 **최대허용중단시간(MTD)**으로, 데이터 복구시점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장애 발생 시점 왼쪽의 ㉠은 데이터 유실 범위를 정하는 복구시점목표(RPO), 오른쪽의 ㉡은 시스템 복구까지의 목표 시간을 정하는 복구시간목표(RTO)이다.

① X: ㉠은 장애 발생 전 어느 시점의 데이터까지 복원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RPO이다. 장애 시점과 그 복구시점 사이의 간격이 허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 기간에 해당한다. 선지의 업무 중단 최대 시간은 **최대허용중단시간(MTD)**에 대한 설명이므로 RPO와 구별해야 한다.

② O: ㉡은 장애 발생 후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허용한 목표 시간인 RTO이다. 일반적으로 **RTO를 짧게 잡을수록 복구체계 구축 비용은 커지고**, 중단이 길어질수록 업무 손실은 커진다. 여기서 비례·반비례는 비용과 손실의 증감 경향을 뜻하며, 정확한 비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O: RPO가 0이면 데이터 손실을 허용하지 않고, RTO가 0이면 서비스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목표를 함께 충족하도록 주센터와 동등한 시스템을 이중 운영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화하는 **미러 사이트**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이는 목표 수준에 따른 구분이며 모든 실제 장애에서 무조건 무손실·무중단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사업영향평가(BIA)에서는 데이터 유실과 업무 중단이 업무에 미치는 피해를 분석하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을 기준으로 RPO와 RTO를 정한다. 따라서 두 지표는 **허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과 복구 지연의 범위**를 나타내어 재해 피해를 검토하고 복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다만 두 수치만으로 모든 위험요인의 발생 확률이나 피해액을 자동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위험 대응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 (㉡) 은(는) 위험 결과를 낮추는 대책과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 (㉢) 은(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 (㉣) 은(는)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① ㉠: 위험 수용, ㉡: 위험 감소, ㉢: 위험 전가, ㉣: 위험 회피
② ㉠: 위험 수용, ㉡: 위험 전가, ㉢: 위험 회피, ㉣: 위험 감소
③ ㉠: 위험 회피, ㉡: 위험 감소, ㉢: 위험 전가, ㉣: 위험 수용
④ ㉠: 위험 회피, ㉡: 위험 수용, ㉢: 위험 감소, ㉣: 위험 전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 수용, 발생 가능성·피해를 낮추면 감소, 제3자와 부담을 나누면 이 문항에서는 전가, 위험한 활동을 포기하면 회피이다. 핵심은 **감수·완화·부담 이전·활동 포기**의 차이이다.

빈칸별 해설

㉠ 위험 수용: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발생할 손실과 비용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전략이다. 위험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 위험 감소: 보호대책으로 **발생 가능성이나 피해 규모를 낮추는 것**이다. 예방 조치로 사고 가능성을 낮추거나, 백업·복구 대책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 해당한다.

㉢ 위험 전가: 이 문항의 네 가지 분류에서는 보험·계약 등을 통해 **제3자와 위험 부담을 나누는 것**을 위험 전가로 연결한다. 엄밀하게는 부담의 일부를 나누는 위험 공유와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위험 전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 부담의 이전·분담이 사고 가능성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 위험 회피: 위험을 일으키는 사업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활동의 위험 노출을 피하는 전략이다. 활동은 계속하면서 대책을 적용하는 위험 감소와 구별된다.

따라서 ㉠ 위험 수용, ㉡ 위험 감소, ㉢ 위험 전가, ㉣ 위험 회피를 연결한 ①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CC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현에 종속적임
·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 보안 기능 및 수단을 정의
·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보안 목표 명세서로 작성

① PP
② ST
③ ToE
④ EAL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ST는 **특정 평가 대상의 구현에 종속된** 보안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안 기능과 실현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구현에 독립적인 공통 요구를 다루는 PP와 구별된다.

NoteBase

핵심 풀이

ST(Security Target, 보안목표명세서)는 **특정 평가 대상의 구현에 종속된** 보안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문서이다. 지문의 '구현에 종속적임'이 ST를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다.

ST에는 보안 요구사항과 함께 해당 대상이 이를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설명하는 TOE 요약명세가 포함된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 보안 기능 및 수단을 정의'한다는 단서도 **요구사항과 그 실현 방법의 연결**에 해당한다.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보안 목표 명세서로 작성'은 이 문항에서 특정 평가 대상·범위에 맞추어 ST를 작성한다는 대응을 나타낸다. 다만 이를 제품의 모든 버전과 평가에 걸쳐 **ST가 영구히 하나뿐이라는 규칙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같은 평가 대상도 다른 ST를 기준으로 별도 평가될 수 있다.

PP(Protection Profile, 보호프로파일)는 같은 유형의 평가 대상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를 **특정 구현과 독립적으로** 정리한다. 특정 제품의 구현에 종속된 문서를 묻는 지문과 구별된다.

ToE 또는 TOE(Target of Evaluation)는 평가를 받는 소프트웨어·펌웨어·하드웨어 등의 **평가 대상 자체**를 뜻한다. 그 대상의 요구사항을 명세한 문서인 ST와 다르다.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평가보증등급)은 미리 정의된 보증 수준에 대응하는 **보안 보증 요구사항 묶음**이다. 특정 제품의 보안 기능과 수단을 설명하는 문서의 명칭은 아니다.

따라서 구현 종속성과 요구사항 실현 방법이라는 단서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ST이며,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 (㉢)(이)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① ㉠: 지능정보화,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 정보격차,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② ㉠: 지능정보화,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 정보과의존, ㉤: 정보격차
③ ㉠: 지능정보서비스,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 정보격차,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④ ㉠: 지능정보서비스,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 정보과의존, ㉤: 정보격차

정답 1번

㉠

지능정보화는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함께 포함**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 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NoteBase

ㄷ

정보격차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ㄹ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은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NoteBase

문 1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② 금융·통신·의료 등 주요 정보공유·분석센터시설

③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④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정답 2번

①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도로 · 철도 · 지하철 · 공항 ·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NoteBase

②

금융·통신·의료 등의 정보공유·분석센터시설은 **국가정보원장 우선 지원 요청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도로 · 철도 · 지하철 · 공항 ·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 · 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 · 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 · 국방과학 · 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2020.6.9>

③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3. 방송중계 · 국가지도통신망 시설

NoteBase

④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4. 원자력 · 국방과학 · 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NoteBase

문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④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정답 1번

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 등 시책 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③

개인정보 처리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NoteBase

④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의 거부와 그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가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NoteBase

문 14.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의 정보보호지침에 관한 설명이다.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4번

㉠

정보보호지침에는 무권한자의 접근·침입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 ·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 운영 등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

㉡

정보보호지침에는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2. 정보의 불법 유출 · 위조 · 변조 ·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NoteBase

㉣

정보보호지침에는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의 안정과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도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 조직 · 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

정보보호지침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NoteBase

문 1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따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② 여성가족부차관
③ 해양수산부차관
④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정답 3번

①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직위만으로 위원이 되는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고 위원장이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해야 그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NoteBase

③

해양수산부차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11. 해양수산부차관

NoteBase

문 16. 다음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3번

㉠

기본계획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NoteBase

ⓒ

기본계획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명시된 정보보호 항목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이다. 선지의 시스템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경비 지원은 법정 열거 항목이 아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 ·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oteBase

ⓗ

기본계획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 ·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호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위치정보시스템

④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정답 4번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oteBase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3. 위치정보시스템

④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이다.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NoteBase

문 1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③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
④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정답 3번

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정한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는 **법령이 정한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③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이며,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NoteBase

④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령이 정한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NoteBase

문 19.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① ㉠: 승인, ㉡: 승인, ㉢: 신고, ㉣: 신고

② ㉠: 승인, ㉡: 신고, ㉢: 승인, ㉣: 신고

③ ㉠: 신고, ㉡: 신고, ㉢: 승인, ㉣: 승인

④ ㉠: 신고, ㉡: 승인, ㉢: 신고, ㉣: 승인

정답 2번

①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승인을 받고,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 · 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NoteBase

②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승인을 받고,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 · 폐업 등)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NoteBase

문 2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시행

②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전담반 구성

③ 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통지

④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해제 및 파손에 필요한 조치

정답 4번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시행**을 총괄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 시행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전담반 구성**을 총괄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3.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 · 평가 및 전담반 구성

③

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사고의 통지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6.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통지

NoteBase

④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것은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며, 지정해제 및 파손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NoteBase